한국자동차공학회
2020년도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우리학회에서는 정관 제15조 및 임원선출·선임규정에 따라 2020년도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회장은 우리학회 임원선출·선임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계소속에서 선출됩니다.

1. 회장 및 부회장 정수

1) 회　장 : 1명 (연구계 소속)

2) 부회장 : 11명 (학계소속 5명, 지회소속 1명, 산업계·연구계 소속 5명)

- 학계소속 부회장은 2~3년제 대학 소속 1명 포함
- 산업계·연구계 소속 부회장은 부품업체 소속 1명 포함

2. 입후보자 자격

1) 회　장 : 학회 부회장 또는 부문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연구계소속 종신회원

2) 부회장 : 학회 부회장, 이사, 지회장 또는 부문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종신회원

3. 제출 서류 및 접수기간

1)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이력서 1부 (소정양식, 2매 이내, 사진포함)
- 소견서 1부 (소정양식, 2매 이내)

2) 접수기간 : **8월 19일(월) 10:00 ~ 9월 6일(금) 18:00**

4. 제출방법 및 제출처

1) 제출방법 : 이메일

2) 제출 및 문의 : 한국자동차공학회 김은태 사무총장

T. 02-564-3971　e-mail. ksae1@ksae.org

5. 선출일정

일정	회의	내용
8.19(월)	-	· 입후보자 등록공고
9.6(금)	-	· 입후보자 등록마감
9.30(월)	-	· 회장단 입후보자 공지 및 평의원에게 통보
10.17(목)	2019년도 평의원회	· 2020년도 회장단 선출
11.21(목)	2019년도 정기총회	· 2020년도 임원 인준

6. 선출방법

- 2019년도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임원 인준

7. 관련규정

- 정관 제3장 (제11조 ~ 제17조)
- 임원선출・선임규정

8. 기타사항

1) 회장은 연임과 중임이 불가합니다.
2) 학계소속 부회장의 연임은 최대 3년이되 중임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 및 연구계 연임제한 없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임기 중에 회장 및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4) 입후보 등록서류 제출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불가합니다.
6) 입후보자를 열거하는 기표번호 순서는 등록신청 접수순으로 부여됩니다.
7) 입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의원에게 고지한 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개인적으로 배포하면(e메일 포함) 안됩니다.

붙임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2. 이력서
3. 소견서
4. 정관 제3장 (제11조 ~ 제17조)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붙임 1]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근 무 처	
직 위	
신청분야 (√표시)	□ 회 장 (연구계소속) □ 부회장 (학계소속 : 4년제 대학) □ 부회장 (학계소속 : 2 ~ 3년제 대학) □ 부회장 (산업계 및 연구계 소속) □ 부회장 (부품업체 소속) □ 부회장 (지회소속)

본인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종신회원으로서 2020년도 한국자동차공학회
□ 회장 / □ 부회장 입후보자로 등록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접수번호		접수일	

[붙임 2]

(□ 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이력서

성 명				사진
근 무 처		부 서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학회경력				
일반경력				
수상경력				
연구개발 실적				

[붙임 3]

기표번호	

(□ 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사진
근 무 처		
직 위		

2매 이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정관

[시행 2015.6.30,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제1장 총칙 생략

제2장 회원 생략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1인 이내
3. 이사 20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필요시에 별도로 무임소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종신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 (무보수)

학회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잔여임기가 1/3 이상 남았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1/3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하며, 감사는 차점자로 보선한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⑤ 학회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만이 법원등기를 하도록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개최하는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단,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한 부회장, 감사, 이사의 충원은 예외로 한다.

②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의 자문을 받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③ 감사는 학생회원을 제외한 개인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부회장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감사를 제외한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이하생략